

교육전담교수 인사규정

제정 2022. 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65조제3항에 의한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 전임교원(이하 “교육전담교수”라 한다)의 자격, 임용, 임무 등 인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교육전담교수는 해당 전공분야 강의(지도를 포함한다)와 별도로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약에 의해 임용되는 비정년트랙 계약제 교육전담 전임교원을 말한다. 다만, 대외적으로는 ‘비정년트랙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조(자격) 교육전담교수는 「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」의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며,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 다만, 전공분야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.

제4조(임용절차) ① 교육전담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교원인사규정 전임교원 신규 임용 절차를 따른다.

② 교육전담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우송학원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③ 교육전담교수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을 따른다.

제5조(계약) ① 교육전담교수의 직급은 조교수로 한다.

② 교육전담교수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③ 교육전담교수의 총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④ 교육전담교수 업적평가 결과 “공통평가항목 및 가·감점 점수 합”이 “50점 미만”인 경우 계약만료와 동시에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.

제6조(임무) ① 교육전담교수의 학기별 책임시수는 2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교육전담교수는 학부 및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 강의, 강의와 관련된 학생지도, 교과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, 방학중에도 계절학기 수업 등 이에 상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
제7조(교원평가) 제6조의 임무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전담교수 업적평가를 매년 실시하며, 평가결과는 교원의 재계약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(보수) 교육전담교수의 보수는 임용 시에 학력 및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복무) 교육전담교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5조를 준용한다.

제10조(적용) 교육전담교수 인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교육전담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.